

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음.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함.

(3) 분쟁조정기구를 가맹사업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설치함으로써 분쟁조정업무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가맹사업거래상당사제도를 가맹거래사제도로 변경(법 제27조 및 제28조)

(1)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상당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맹사업거래상당사의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그 업무범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의 대행과 정보공

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업무를 추가함.

(3) 가맹거래사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8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박명재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 단서를 삭제한다.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事業者”를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當事會社”를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各目”을 “각 목”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企業結合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強要 기타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結合”을 “기업결합”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라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상법”

을 “「상법」”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8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회사의 주식”을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로, “사업관련손자회사가”를 “손자회사가”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의”를 “손자회사의”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가”를 “손자회사가”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손자회사가 주식”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상

법”을 “손자회사가 「상법」으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기간 내에 손자회사”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나목 및 다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하고, 동호라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하며,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8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1호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1호”를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전의 제6항)중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⑤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주회사등

제1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를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후에”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5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과 企業結合한 경우”를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2호중 “與信專門金融業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제2조제1호의 新技術事業者와 企業結合한 경우”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

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算定”을 “산정하거나 최대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으로 한다.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대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변경허가추천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2.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3.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을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是正措置)”를 “(시정조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을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위반한 경우에는 企業結合 當事會社를 말한다]”를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

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을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하고, 동호가목 및 동호나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제16조(시정조치)”를 “제16조(시정조치 등)”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를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로, “第16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6조(시정조치 등)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第16條(是正措置)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第16條(是正措置)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전의 제8호)중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행위로서 다른 事業者”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신고자 등에 대한 減免)”을“(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신고”를 “자진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減輕 또는 免除의 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第19條(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第3項의 規定”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중 “우려가 있거나 公共의 이익에 反하는 경우”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제4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제45조의 제목“(委員의 署名·捺印)”을“(의결서 작성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9장의2(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3.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④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

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의4(협의회 회의) ①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 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8조의6(조정 신청 등) 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시정조치) 또는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2.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7(조정 등) ①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분쟁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⑤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53조의3제2항중 “주소”를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동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를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장의2에 제5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8(결손처분)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59조중 “著作權法, 特許法, 實用新案法, 디자인보호법 또는 商標法”을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으로, “權利의 행사”를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한다.

제62조중 “委員 또는 公務員은”을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으로 한다.

제13장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제1항제2호중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第1項 本文 또는 第3項의 規定에”를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항의 規定에”를 “제5항을”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6호중 “第16條(是正措置)第1項”을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으

로 한다.

제68조제2호중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6항”을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으로,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지주회사등”으로 한다.

法律 第7315號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부칙 제8조중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를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중 “商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가목중 “中小企業基本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9조제3항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3호 전단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나목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保險業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證券去來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을 “「종합금융

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2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11조의2제3항 전단중 “證券去來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11조의3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4조의4제1호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중 “政府組織法”을 각각 “「정부조직법」”으로 하며, 제50조제7항 후단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제53조의3제1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며, 제55조의6제1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69조의2제5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5항과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

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도래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1) 2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출자회사와 신설회사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고 있어 기업결합의 실질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었음.

(2) 앞으로는 2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최대출자자만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 결합관계에 있는 출자회사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출자 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1)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도 제한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범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함.

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의 소유를 허용함(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1)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자회사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없더라도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3) 지주회사 관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법 제19조제5항)

(1) 현행은 가격결정 등 일정한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

적 경쟁제한성만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2)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2 이상 사업자의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외관상 일치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사업자 간 접촉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간 합의가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마. 공정거래분야의 분쟁조정제도 도입(법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9까지 신설)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 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분쟁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함.

(4)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무체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용제의 범위 명확화 (법 제59조)  
「저작권법」 등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한 무체재산권의 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

위를 「저작권법」 등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8 월 3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법률 제8632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